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이버 레커”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폭력행위 가중 처벌〉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00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현정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7. 22.
3. 회 부 일 : 2024.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일명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악성 댓글 등 이른바 ‘온라인 집단 린치’나 특정 이슈를 자극적으로 편집한 영상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또한, 온라인상의 괴롭힘 행위는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람을 처벌하게 함으로써 사이버상 폭력 범죄 예방효과를 제고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2조의2(통신매체를 이용한 폭력)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려는 것인 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이라는 입법목적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즉, 집단적 “폭력”, 상습적 “폭

력”,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력범” 등 형법상의 물리적 폭력을 집단적 혹은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바,¹⁾ 개정안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상으로 이루어지는 따돌림, 괴롭힘 등이 현행법의 입법목적인 “폭력행위 등”의 가중처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념적으로 부합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추상적·포괄적인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가 있음.

형벌 부과를 위해서는 법률이 범죄구성요건과 그 법적 효과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는 바,²⁾ 개정안은 전화,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형벌 부과 전제인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³⁾

또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유발”이라는 개념은 포괄적인 표현으로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구성요건으로서의 구체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흥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총론”, 박영사, 2020, 24p.

3) 이에 따라 가령, 상급자가 전화나 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업무지시를 받은 자가 그 업무지시로 인해 스트레스나 두통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개정안의 범죄에 해당되게 되어 업무지시자가 처벌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폭력”을 폭력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누구든지 청소년이 청소년폭력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선도하고, 관계기관등에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처벌이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조항에서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넓게 규정하면서도,⁵⁾ 형사절차 등에 있어 특례⁶⁾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가정폭력범죄”를 따로 규정하여 “가정폭력” 의미를 구체화⁷⁾하고 있는 점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7. “청소년폭력·학대”란 폭력이나 학대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사회의 책임)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2.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학대 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선도할 것
3.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청소년이 청소년폭력·학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에 신고·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이하 생략)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예를 들어 고소를 제한한 형사소송법과 달리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는 특례를 들 수 있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중략)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형사소송법 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종합하면, 개정안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 시키기만 한다면, 수범자의 행위태양을 고려하지 않고 처벌하도록 하는 바, “폭력행위 등”에 부합하도록 현행법이 규정한 행위를 구체화하여 통신매체 이용행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나아가 통신매체 사용자체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수범자가 예측하기 어렵고 자의적인 법집행의 가능성도 있는 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⁸⁾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057

과 같다
(중략)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학사)의 죄
(이하 생략)

8) 헌법재판소도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판시한바 있음(헌재 결정 1995. 9. 28. 93헌바50).